

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(제31조의2제3항 관련)

1. 안전점검자의 자격 및 인원

안전점검자	자격	인원
충전원	별표 14 제4호나목4)의 교육을 받은 사람	충전 필요인원
수요자시설 점검원	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수요자시설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	점검 필요인원

2. 점검장비

- 가. 가스누출 검지기
- 나. 가스누출 검지액(檢知液)
- 다.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

3. 점검기준

- 가. 충전용기 및 배관의 설치상태(수요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나. 충전구 및 압력계 연결부에서 도시가스누출 여부

4. 점검시기: 도시가스를 충전하는 때마다 점검 실시